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53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1. 10. 26.

판결 선고2021. 11.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접수 제92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D를 상대로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6151호로 원고가 경남 합천군 E 소재 F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납품한 가설재 목재합판 및 일반철물, 잡자재 등의 물품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9. 8. 21. D에게 송달되어 2019. 9. 5. 확정되었다.

2) D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4949 사건에서 2021. 8. 10.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4,706,849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9. 2. 확정되었다.

나. D의 처분행위

D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9. 8. 28.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접수 제922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는 9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의 배우자였고, D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19. 8. 21.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9. 8. 2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2019. 8. 2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권성우

별지